

'04. 12. 20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0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2004년 12월 7일

회부일자 : 2004년 12월 8일

상정일자 :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004. 12. 15 :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안 이유

-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입은 피해 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실무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함 (안 제2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충청북도지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안 제3조)
-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안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안 제5조)
-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 (간사는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안 제7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존속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주요내용은

-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안 제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관계공무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
-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안 제5조)
-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1인을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7조)
- 실무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안 제10조)

따라서 만주사변(1931. 9. 18) 이후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군인·군속, 노무자, 종군위안부 등 피해 당사자들의 아픈 상흔을 치유하고, 피해와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고 공감이 된다고 판단됨.

- 다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관련 그 동안 우리 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피해신고 건에 대한 확인방법, 그리고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확보대책과 업무수행의 적극성 보장을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보충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수정 이유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참여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그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위원 위촉대상에 포함
(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7.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4. 12. 15.
제 안 자 : 정상혁의원 외

□ 수정 이유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참여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그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를 위원 위촉대상에 포함
(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그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구성) ①.....

.....

1. (생략)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제3조(구성) ①.....

.....

1. (제정안과 같음)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265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만주사변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입은 피해 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일제 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실무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사항 등을 처리함 (안 제2조)
- 나.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충청북도지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안 제3조)

- 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안 제4조)
- 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안 제5조)
- 마.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
(간사는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안 제7조)
- 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존속 (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불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임

5. 입법예고결과 의견 : 의견 없음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부지사·자치행정국장·복지환경국장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②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또한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시·군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